

### 제조물책임법

〈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일명 PL법)의 전문을 수록합니다 〉

- 편집자 주

제조물책임법  
[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第1條 (目的) 이 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2002..7. 1]]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표시상의 缺陷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설명.指示.警告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

나. 製造物에 姓名. 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目的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目的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施行日 2002. 7. 1]]

第3條 (製造物責任) ① 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8228;身體 또는 財產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 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

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  
여야 한다.〔〔施行日 2002. 7. 1〕〕

第4條 (免責事由)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  
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  
償責任을 免한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  
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  
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の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  
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缺陷에 의한 損害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第2號 내지 第4  
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施行  
日 2002. 7. 1〕〕

第5條 (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施行日 2002.  
7. 1〕〕

第6條 (免責特約의 제한)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  
責任을 排除하거나 제한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는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  
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2002. 7.  
1〕〕

第7條 (消滅時效 등) ①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  
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  
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損害가 발생한 날부  
터 起算한다. 〔〔施行日 2002. 7. 1〕〕

第8條 (民法의 적용)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  
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  
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施行日 2002. 7.  
1〕〕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  
다.

②(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製造業者가 최  
초로 공급한 製造物부터 적용한다.